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일시	2017년 4월 12일(수)	문의	이진우 노동안전보건부장 010-8746-259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및 노동자 건강권 대선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4월12일(수) 오전 11시30분
- 장 소: 국회 앞
- 주 최 : 민주노총

- 프로그램
 - 여는 말씀 민주노총 이상진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 재벌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금속노조 함재규 부위원장
 -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생명안전 일자리 :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철폐 및 전면 적용: 민주일반연맹
 - 산재보험 전면적용및 인정기준 확대: 건설산업연맹 이주안 노안보위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당에 대선요구안 전달

<기자회견문>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대선 요구

지난 15년간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3만6천명에 달하고, 136만명이 산재를 당했으며,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만 241조 1,200억에 달한다. 이는 2,500만원 연봉 노동자 964만 4천명의 고용이 가능한 금액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명이 죽는 산재 사망, 메르스 사태, 가슴기 살균제 참사, 지진 등 한국사회의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광폭 행보와 정권의 방조로 인한 엄청난 손실이 오로지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700만 촛불 시민이 만들어낸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생명 안전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거는 후보는 찾을 수가 없다. 대선 후보들은 개혁의 방향과 세부 대책이 없는 ‘안전한 국가’를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이루어 냈지만 최소한의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대선 후보들은 강력한 개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19대 대선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끝장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기업 살인법이 제정된 영국은 1명의 산재사망에 기업벌금 15억을 부과했고, 미국은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30억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천 냉동창고 40명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에 1명당 50만원 꼴인 2,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과 정부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벌 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둘째, 위협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 업무 인력을 확충하며, 원청 책임을 강화하라
국정농단의 공범이었던 재벌 대기업은 위협의 외주화의 주범이다. 재벌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무차별적인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사망이 줄을 잇고,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위협업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전문가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인력을 확충하라

셋째,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구멍이 숭숭 뚫려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에 수많은 적용제외를

남발하고 있다. 적용제외의 남발과 방치로 방사선 취급, 지자체 청소, 도로보수, 학교 급식 현장의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선임, 노동자 참여 등이 방치되어 왔다. 특히 건설기계, 킥 서비스등 운수사업 분야는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다. 위험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법에서 적용제외 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넷째.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직업병 인정기준을 확대하라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해외파견 노동자,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등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ILO 가입국가의 3분의 2가 시행하고 있는 출 퇴근재해 산재도 전면 적용, 직업성 암, 뇌심질환, 정신질환 등 직업병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산재심사 과정에서 흘리는 산재노동자의 고통과 분노의 눈물은 끝장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19대 대선 후보에게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이 함께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7년 4월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 민주노총 생명안전 존중 일터와 사회 개혁을 위한 과제

■민주노총 생명안전 존중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개혁 요구■

1. 과제 요약

- 노동자의 안전은 시민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상당부분이 시민안전 직결 사업장임. 이에 민주노총은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같이 과제로 제출하고 있음 .

<p>[안전한 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기업 처벌 특별법 제정 ○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인정기준 확대 <p>[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생명안전 직결 업무 외주화 중단 및 인력 확충 ○ 공공안전 대책 수립 ○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

2) 입법 정책대안

과제	입법, 정책 대안
중대재해 기업 처벌 강화	-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
위험의 위주화 금지 및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 위험업무, 생명안전업무 도급, 재하도급 금지 - 생명안전 업무 기간제, 파견고용 금지 입법 -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 상시근로자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하청 노동자 참여 확보 - 원 하청 합산재해 도입 - 하도급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폐지 및 전면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감정노동 보호입법 - 산재은폐 근절. 병원 신고제도 도입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및 인정기준 강화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해외파견 노동자, 소규모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 - 산재보상 입증책임 전환 및 심사승인제도 개선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인력확충	- 생명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 시민안전 직결 업무 인력 확충
공공안전 대책 수립	- 교통 : 철도, 지하철 내구연한, 1인 승무제 폐지, 육상과적 화주 책임 도로법 개정 - 산업단지 : 노후원전 폐쇄, 노후산단 전면 재보수 및 보수주기 도입. 산업단지 안전관리 법제화 -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 :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병원인력 확보 - 규제완화 철폐 및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폐기 - 공공안전에 노동자·시민 참여 구조 보장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 안전·보건 관련 각종 전문가 선임 확대 -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공시 제도 도입

2. 적폐중의 적폐. OECD 산재사망 1위 산재공화국

- 1) 지난 15년간 산재사망 노동자는 3만5천 968명. 산재는 136만 3천 293명
- 해마다 2,4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지난 15년 동안 일터에서 죽음의 행진 지속
 - 2015년 산재사망 2,066명. 정부 산재통계 9만 909명
 -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사망. 3시간 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현실
 - 산재은폐의 심각성으로 실질 산재는 정부 통계의 12배에서 30배에 달함

2) 지난 1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241조 1,239억

- 2017년 정부 총예산 400조의 60%가 산재로 손실
- 2,500만원 연봉 노동자 964만명 고용 가능 금액
- 매년 15조 7천 694억. 2015년에는 20조3천955억

[표-1] 노동부 산재통계 자료 취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노동부 산재통계 자료 취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년도	산재(명) ①	산재사망(명)②	경제적 손실액 (단위,억)	기준변경 통계③	사망통계 차이④
2015	90,129	2,066	203,955	1,810	-256
2014	90,909	2,134	196,327	1,850	-284
2013	91,824	2,233	189,771	1,929	-304
2012	92,256	2,165	192,564	1,864	-301
2011	93,292	2,114	181,269	1,860	-254
2010	98,645	2,200	176,186	1,931	-269
2009	97,821	2,181	173,157	1,916	-265
2008	95,806	2,422	171,094	2,146	-276
2007	90,147	2,406	162,113	2,159	-247
2006	89,910	2,453	158,188	2,238	-215
2005	85,411	2,493	151,288	2,282	-211
2004	88,874	2,825	142,995	2,586	-239
2003	94,924	2,923	124,090	2,701	-222
2002	81,911	2,605	101,016	2,605	
2001	81,434	2,748	87,226	2,748	
합계	1,363,293	35,968	2,411,239	*노동부는 2002년 이전 통계	
평균	90,866	2,398	160,749	분류 없어 조정 못함	

① 산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

② 산재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통계 (2012년 변경 전 통계 기준 적용)

③ 노동부 통계 변경 :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10년 치 통계 변경 발표

④ 노동부 통계 변경 기준에 따른 산재사망 통계 차이

3) 한국 산재사망의 특성

(1) 동일 유형,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 산재사망

-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수리 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 : 2013년, 2015년, 2016년

- 안전펜스 없어 용광로 빠져 사망 : 2010년, 2012년, 2015년
- 현대중공업 매년 10명, 13명 산재사망 반복 : 현대건설, 대우건설, GS 건설
- (2) 후진국 형 사망사고 반복
 - 산재사망의 60% 이상이 추락 사망
- (3) 하청, 파견, 건설일용... 비정규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장 취약계층 산재사망 집중
 - 건설 노동자 매년 600여명 사망 반복. 영국 건설업의 11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
 - 주요 대기업, 공공부문 산재사망 80%- 100% 하청 비정규 노동자
 - 산업재해의 80%이상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

3.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부 과제

①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 2001년~2014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백 27만 3천 164명이 산재를 당함. 산재사망은 3만 3천 902명임. 정부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20조 7,721억 원에 달함. 2006년도 총사고 1,300만 건 중 1위는 산업재해로 약 1,300만 건임. 은폐된 산재까지 감안한다면 정부 통계의 13배~30배에 달함.
-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 창고 사고에 대해 기업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 2,000만원으로 노동자 1명 사망에 벌금 50만원 꼴임.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은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남.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없이 말단 관리자 처벌만 이어지고 있음.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참사도 오세훈 전(前)서울시장의 부실시공과 공기업 외주화 남발이 주요한 원인이었으나, 책임자 처벌은 없이 하급관리자만 처벌됨. 메르스 확산의 주요 기업인 삼성병원의 경우 최소한의 처벌도 진행되지 않았고, 가슴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에도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판결이 남발되는 등 시민참사에 대해서도 ‘숨방망이 처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세월호 참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참사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여 산재사망과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고, 특히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재해에 대해 원청 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음. 기업의 조직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것만이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 대한 강력한 예방대책이라 할 수 있음.

②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 하청 산재에 대한 정부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의 40%가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발생하고,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사망의 85%가 하청 산재임.
- 2016년 발생한 20대 청년노동자 메탄올 중독사고는 삼성, LG의 3차 하청업체의 불법과

건 고용노동자였으며, 광주 남영전구 수은중독은 4차에 걸친 다단계 하청에서 발생했음. 구의역 참사, 남양주 사고, 고려아연, 한국석유공사,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기사 노동자 사망 등 하청 노동자 사망이 줄을 잇고 있음.

- 재벌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32%로 전체 기업 평균의 3배임. 원청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첫 번째 이유로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을 40%가 지목하였음. 재벌 대기업은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 하여 산재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 나가고 있으며, 산재보험료 할인은 매년 수백억 원씩 받고 있음. 30대 재벌이 최근 3년간 받은 산재보험 할인액은 1조 3,796억임
- 철도, 지하철의 선로 수리 정비 업무, 원전의 방사선 취급업무, 노후화된 화학산단의 정비 보수 업무, 병원의 외주화 남발 등으로 각종 시민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공공안전 분야의 외주화는 지진 등과 같은 재난참사의 위험 경보 시스템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하청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 재난참사에 대한 긴급 대응조차도 취약한 상태임.
- 상시적인 고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직접 정규직 고용이 원칙임. 특히 시민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금지하고, 직접 정규직 고용을 강제해야 함.
-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하청 산재가 다발하고 있으나, 현행의 원청 책임은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안전교육 장소 지원, 합동 점검 등으로 제한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사업장의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안전보건조치 등을 원청의 직접 책임으로 강제해야 하며, 하청 노동자도 산재예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권리를 보장해야 함.
- 또한 하청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재해 통계를 생산하고, 하청의 도급 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기업이 안전보건에 대한 인력과 투자를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함.

③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를 남발하고 있음. 업종이 통제로 적용제외 규정이 많은 분야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 각종 공무원과 지자체 청소, 도로보수원 등 공공행정 분야, 학교를 비롯한 교육서비스업, 원자력 안전법, 광산, 선박 등의 업종과 사무직 노동자등임. 안전보건 관리 체계뿐 아니라, 안전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적용제외가 많음.
-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120억 건설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조차 제외되어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음.

- 사무직, 서비스직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과 고객폭행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남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법을 수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일터 괴롭힘을 비롯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전혀 없어, 사무, 서비스직 노동자의 주요 산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자체가 부실함.
- 사무 서비스직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 대면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고객의 폭행 폭언으로 인한 자살, 공황장애, 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기업은 고객감동을 기치로 내걸면서, 사업장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성과평가에 반영시키고 있어, 부당한 고객의 요구에도 노동자들은 인격적 모독을 감수하고 있음. 이미 유럽에서는 사업장내의 폭력에 대해서는 고객으로 인한 폭언 폭력을 포함하여 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고발의무를 강제하고, 다양한 예방보호를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대두된 감정노동에 대해 한국은 여전히 사업주의 예방보호의무 법제화를 외면하고 있음
- 건설기계, 화물, 퀵 서비스 등 위험 업종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음. 영국, 독일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고용 노동자도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 대다수 국가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업종과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전면 적용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제외 남발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고조차 공무원, 사학연금 사업장은 이행되지 않고 있어, 공무원, 지자체, 학교, 병원등은 산재예방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 한국의 산재은폐는 정부 공식 통계의 13배에서 30배에 달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처벌도 미약함. 이에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에도 119를 회피하고 지정병원으로 옮기면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사업주의 산재은폐 중용과 강요로 산재은폐가 횡행하고 있음. 산재은폐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으로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병원 신고 제도를 한국적 방식으로 도입해야 함.

④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인정기준 확대

-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임. 그러나 한국의 산재보험은 특수고용, 해외파견, 소규모 건설공사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특수고용 노동자는 특고 산재특례와 중소기업주 특례의 2가지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나, 특고산재 특례는 노동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제외신청 제도> 가 있어, 대상 노동자의 9%만이 적용되고 있음. 건설기계, 화물 등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주 특례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 제도로, 대상 노동자의 0.1%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 되고 있음. 외국의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고 있음.

-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으로 처리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는 해외파견으로 되어,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중동,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 의료체계가 취약하고, 각종 위험으로 사고와 직업병이 다발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가입하는 민간보험에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함.
- ILO 가입국가의 3분의 2 국가에 적용되는 출퇴근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청소노동자, 건설노동자, 산림 감시노동자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적용배제 되어 왔음.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노동부와 새누리당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전면 적용법안을 파견법 확대등 노동계약 법안과 연계하여 통과여부를 주장해 왔으며, 현재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과실에 따른 차등 보상, 단계적 적용>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퇴근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도록 입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새누리당 제출 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출퇴근 산재보험이 전면적용 되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함.
-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와 자살이 최고인 한국이지만 이에 대한 직업병 인정기준은 지극히 높거나 적용제외 되어 있음. 또한, 2013년 직업병 인정기준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30년 만에 개정된 것임. 외국의 경우에는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에 대한 별도 구조를 갖고 정기적인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나, 한국은 정기적인 심의구조도 없음.
- 한국의 직업병 인정률은 50% 전후로 지극히 낮음. 직업성 암과 뇌심혈관계 질환은 30%대의 인정률에 불과함. 이는 직업병에 대한 노동자 접근성이 낮고, 직업병 산재에 대해 노동자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심사승인체계에 있음. 산재신청을 가로막으면서 산재신청을 위한 각종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직업병 불승인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음. 입증책임을 전환되어야 함.
-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상황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함. 기업은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영업비밀>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위험을 숨기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업장이 안전보건 자료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는 정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며,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는 최소화 하도록 제도화 하며, 노동자 및 퇴직자와 유족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법제화 하여야 함.

4.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세부과제

①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시민안전 직결 업무 인력 확충

- 위험의 외주화는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원인임. 구의역 참사는 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로 비롯되었으며, 철도, 지하철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각종 철도, 지하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구의역 참사 이후 서울 지하철은 7개 업무를 무기 계약직 형태로 직접 고용하였으나, 여전히 외주화 업무는 남아 있으며, 전국의 철도, 지하철의 외주화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인천공항도 외주화가 심각하여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보안, 소방, 시설유지·보수 등 전 분야에서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이 남발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권한은 제약되어 있음
- 2015년 메르스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격리자는 18,752명에 달함. 메르스 확진 및 사망자 중 21%가 병원 종사 노동자임. 특수고용인 간병 노동자, 이송요원, 구급차 안전요원 등 하청 노동자가 다수임. 병원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메르스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었음.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병원의 적정인력이 보장되지 않는 실태는 외주화와 더불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임.
- 2016 국정감사에 의하면 원전, 발전 등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도 외주화 하청 노동의 비율이 많고, 사망사고의 80%~100%가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정보 전달체계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음.
-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의 효율성만을 내세우고 있어, 인력 고용을 최소화 하고 있음. 적정 안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쳐 나는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음.
-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의 대부분이 1인 승무제를 시행하고 있음.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개선 대책으로 제시되었던 1인승무제 폐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인역사 등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버스의 경우에도 정비 인력을 지속 축소되고 있음. 가스의 경우에도 정비 주기를 단축하고 있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②공공안전 대책 수립

- 교통 : 철도, 지하철 내구연한, 1인 승무제 폐지, 육상과적 화주 책임 도로법 개정
- 산업단지 : 노후원전 폐쇄, 노후산단 전면 재 보수및 주기 도입. 산업단지 안전관리 법제화
-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 :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병원인력 확보
- 규제완화 철폐 및 기업규제완화 특조법 폐기
- 공공안전에 노동자. 시민 참여 구조 보장

○ 대중교통

- 세월호 침몰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선박의 문제임. 그러나, 이는 선박뿐 아니라,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등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 대중교통 분야의 운송수단 및 설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설비 보수를 강화하여야 함.
- 교통사고중 화물차 사고는 연 평균 1,300명에 달함. 화물사고의 상당수는 과적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이며, 과적으로 인한 교량피해도 연간 300억원이 소요됨. 과적의 원인은 화주의 강요와 저가 운임에 있음. 과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보장과 더불어 화주에게 과적 책임을 묻도록 도로법 개정이 필요함.

○ 산업단지

- 주요 국가산업단지는 1960-1970년대 조성되어 노후화 실태가 심각함. 울산등 노후 화학산단에서 폭발 화재사고가 빈발해서, 대형사고에 대한 잠재 위험이 높음. 특히, 2016년 지진 발생으로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울산 경성권에 원전과 화학산단이 있어 지역주민의 위협과 불안을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지진, 원전, 화학산단 모두 근본 예방대책이 아니라 대피 훈련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 무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음. 그러나, 기업은 오히려 설비 보수 주기를 늘리고 예산 투자를 감축하고 있음
- 노후 원전 및 폐쇄 및 노후 산단에 대한 전면 재보수 주기가 규정화 되어야 함. 또한, 위험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개별 사업장뿐 아니라, 산업단지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규정하는 법률과 정책이 개선되어야 함.

○ 메르스등 감염성 질환

- 신종플루, 메르스등 신종 감염성 질환은 계속 다양화 되고. 예방대책도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메르스 사태는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공공의료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식을 확산시킴
-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공공의료체계의 확충과 병원의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병원인력이 제정 되어야 함.

○ 규제완화

- 과적, 선령완화 등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규제완화 뿐 아니라 판교 붕괴, 노후 철도 지하철 등 반복적인 재난참사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규제완화임. 이명박 정권에서 더욱 가속화 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규제는 암 덩어리> 라며 무차별적인 규제완화가 진행되어 왔음.
-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은 사업장 안전, 보건, 가스, 위험물 관리 등 각종 안전관련 규제완화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사업장의 각종 안전보건관리를 위탁 대행으로 넘기게 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동화 시키고 붕괴시키고 있음.
-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검토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규제완화가 중단 및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기업규제완화 특별 조치법>은 폐기되어야 함.

○ 노동자, 시민 참여

-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 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종합적인 안전대책은 없이 안전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각종 통제만 강화하고 시민안전에 대한 시민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 2013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2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를 구성 운영 가능함.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의 공공기관의 장과 지역의 유지들로 채워져 있음.
- 공공 교통, 화학사고, 지역안전등 공공안전에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무엇보다 각종위험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므로,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중소기업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개혁을 통해 사업장 안전을 통한 지역안전 강화를 보장하여야 함.

③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 안전보건 전문가 선임 확대

- 매년 2,400명이 사망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각종 사업주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선임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업장 자체가 제한적임. 선임의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위반 시 처벌도 미약함.
- 2013년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사업장 숫자는 3,676,876개이고, 종사자는 19,173,474명임. 그러나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9,391개 사업장으로 0.5%에 불과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4,080개 사업장으로 0.3%에 불과함.
-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 36,760개 중 업종별 적용제외가 많아, 안전 관리자는 52%, 보건관리자는 38%만 선임 대상임.

[2013 전국 사업체 조사 보고서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비율]

구분	전체 사업장	50인 이상	선임 대상	전체 사업장 대비 선임대상	50인 이상 사업장 대비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3,676,876	44,819	19,391	0.5%	43%
보건관리자	3,676,878	44,819	14,080	0.3%	31%

- 또한 고용규모가 확대되어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추가 채용인원이 2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 채용한 관리자에 대해서도 겸직이 허용되고 있음. 1,000인 이상 사업장도 평균 안전관리자는 2.53명, 보건관리자는 2.44명이며, 전체 사업체당 평균 채용인원은 안전 관리자는 1.6명, 보건관리자는 1.5명에 불과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위탁 대행이 가능하게 되어, 2014년 기준 선임 신고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는 76%, 보건관리자는 80%가 1개월에 1~2회 방문 점검하는 위탁대행으로 되고 있음. 300인 이상 사업장, 심지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위탁대행도 확대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분야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 보관관리 책임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전기 안전관리자 등임. 또한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이 허용되는 범위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 보관관리 책임자, 유독물관리자 등임.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도입 전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비교]

구분	특조법 개정 전	특조법 개정 후	증감
안전관리자	26,057	16,520	-9,537(-36.6%)
보건관리자	11,296	9,208	-2,088(-18.5%)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를 확대하고, 직접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사업장내의 일상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정부의 안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권한 강화가 필요함.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은 330여명으로 1인당 5만여명의 노동자와 5,672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실제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은 전체 사업장의 1%내외만이 감독을 받고 있음. 매년 노동부 감독에서 90%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서 1년에 99%의 사업장이 정부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현실은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각종 안전규정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산업안전을 비롯한, 가스, 전기, 위험물 등 각종 안전점검, 인증 감독을 공공화 하고 정부 감독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함.

○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공시 제도

-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서 직접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분야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산재사망, 재난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 및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처벌 강화뿐 아니라, 기업이 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강제하여야 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건설업에 적용되고 있음. 이 제도는 건설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책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채용 및 각종 안전보건 설비나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전 업종에 전면 적용하여, 기업이 매출의 일정 비율은 안전보건에 투자하도록 강제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하도급 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낙찰률에서 배제하는 등 실질 금액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용공시제도를 원용하여 기업이 안전보건 인력 보유, 투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를 간접 강제하도록 하여야 함.